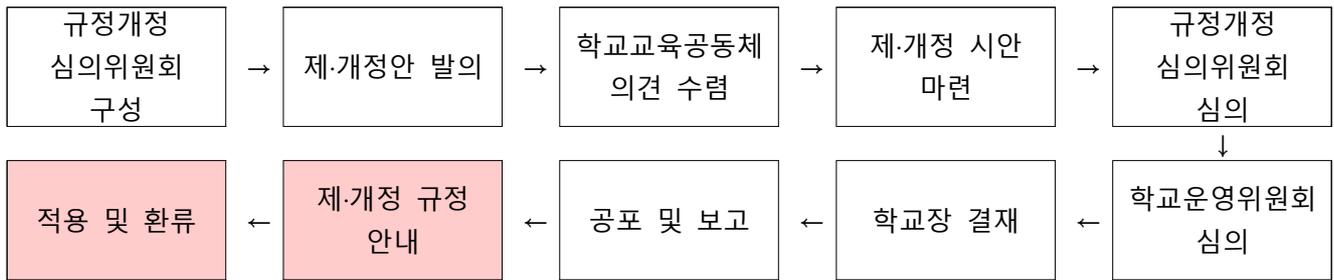


## 외북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본교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개정되었고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외북초등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에 탑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 2. 규정 전문: 외북초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에 탑재

가. 외북초등학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외북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2023.11.20. 개정)

나. 학교알리미 → 외북초등학교 검색 → 교육활동 → 학교규칙 및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외북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 3. 주요 개정 내용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 고시 제8조제4호 관련(학칙으로 정한 기타 생활지도의 범위)
- 고시 제12조제6항 관련(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고시 제12조제9항 관련(학생 물품 분리 보관)
- 고시 제18조 관련(그 밖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나. 학교생활인권규정 자체점검에 따른 개정

- 학교생활인권규정 공시 여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 관련 규정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수렴에 관한 방법을 명시
-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어린이회에 관한 규정 삭제
-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무단결석을 미인정결석으로 수정

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교육지원청 점검에 따른 개정

-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혐오 표현 금지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
-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징계 상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시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절차 명시

2023. 11. 30.

## 외 북 초 등 학 교 장